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	2024. . .	
연월일	(제 회)	

고령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고령군수 (환경사업소장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무팀 심사필

고령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24. . .

제출자 : 고령군수

1. 개정이유

- 생활폐기물 배출요일과 배출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종류별 배출일시를 조정(수정)하고 쓰레기봉투 제작 설명서에 배출시간 및 수거요일, 문의사항(관련부서)을 현행화 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 개정내용

가. 종류별 배출요일 수정 (안 제5조제3항 별표 3)

- 배출요일 일,화,수,목, 배출시간 20시 ~ 익일 05시로 함

나. 쓰레기봉투 제작 설명서 수정 (안 제7조제2항 별표 4)

- 배출시간 20시 ~ 익일 05시, 배출요일 일,화,수,목, 고령군 환경사업소(☎ 950 - 7051~7054)로 함

3. 개정(안) : 붙임

4. 관련법령

가. 관련법령 : 「폐기물관리법」

나. 입법예고 기간 및 결과 : 2024. 09. 12. ~ 10. 04. / 의견없음

다. 예산관련 사항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라.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마. 규제영향분석 : 해당사항 없음

바. 그 밖에 참고사항 :

[붙임]

고령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령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과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 3】

종류별 배출요령 및 배출일시

종 류 별	배출요일	배 출 요 령	배출시간장소
일반쓰레기	<u>일,화,수,목</u>	흰색 규격봉투 및 재사용 봉투에 넣어서 묶어	<u>20시 ~</u> <u>익일 05시까지</u> <u>지정된</u> <u>배출장소</u>
음식물류폐기물	<u>일,화,수,목</u>	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에 넣어서 묶어	
재활용품	화,목	종류별로 묶거나 봉지에 넣어서	
연탄재	화,목	일반용기 등에 담아서	
대형폐기물	화,목	읍·면사무소 및 대행업체 신고 후 스티커를 붙여서	

【별표 4】

쓰레기봉투 제작 설명서

1. 일반용봉투 형식



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.

쓰레기 봉투 (1)

- 일반 용 -

쓰레기는 20시 ~ 익일 05시까지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합니다.

쓰레기는 종류별로 수거요일을 꼭 지켜서 배출합니다.		
종 류 별	<u>배 출 요 일</u>	배 출 요 령
생활쓰레기	<u>일, 화, 수, 목</u>	규격봉투에 담아서
재활용품	<u>화, 목</u>	종류별로 묶어서
연 탄 재	<u>화, 목</u>	일반용기에 담아서
대형폐기물	<u>화, 목</u>	스티커를 붙여서


※ 위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1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문의사항 : 고령군 [환경사업소 \(☎ 950 - 7051 ~ 7054\)](tel:950-7051) 및 읍·면사무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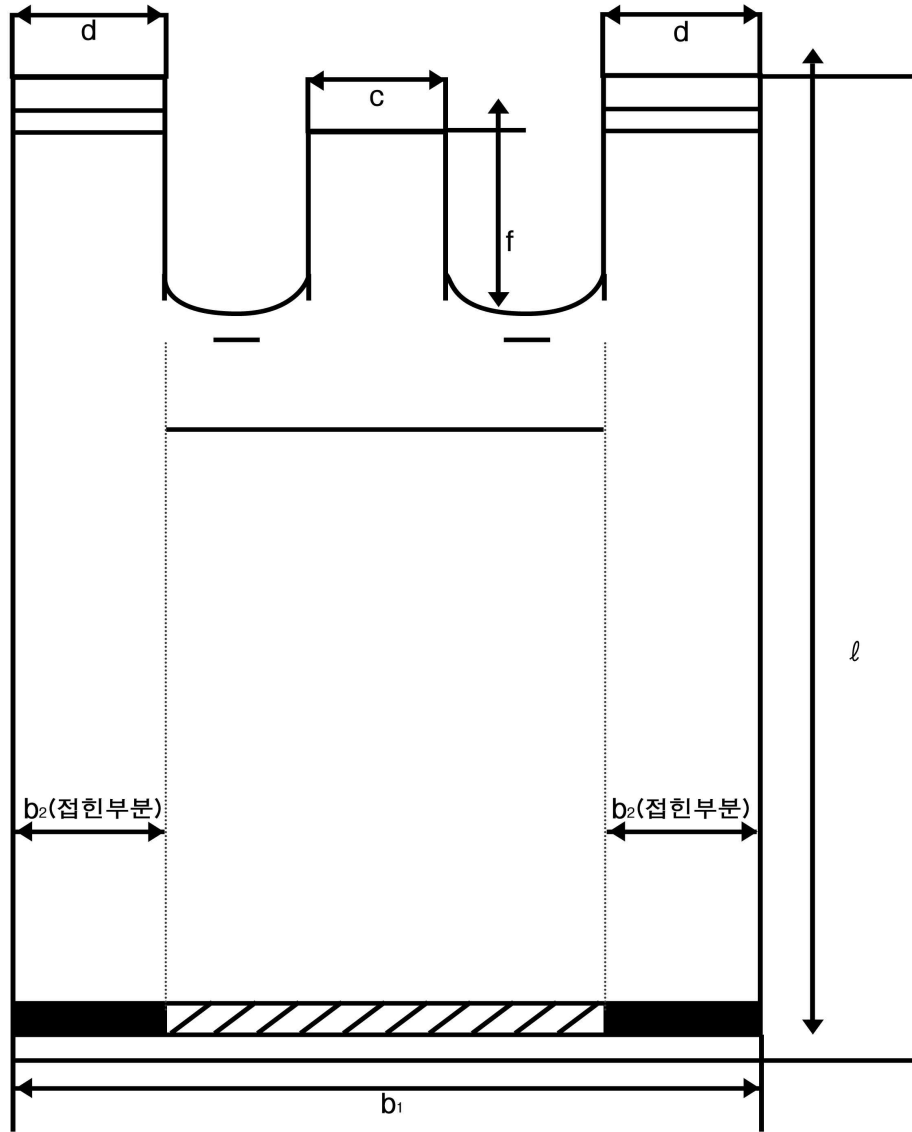
고 령 군 수

[품질인증 표시]

2. 공공용봉투 형식


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.
쓰레기 봉투 (1) - 공 공 용 -
1. 이 봉투는 도로변, 골목길청소, 자연정화활동 및 공공행사 후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용도로만 사용합니다.
2. 공공용봉투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.
※ 위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1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문의사항 : 고령군 환경사업소 (☎ 950 - 7051 ~ 7054) 및 읍·면사무소
고 령 군 수
[품질인증 표시]

3. 재사용봉투 형식



비 고 1. l 은 봉투의 높이, 봉투의 나비는 접힌 부분을 펼친 전체나비 $b_1 + 2b_2$ 로고, b_1 은 봉투의 마무리 나비, b_2 는 접힌부분의 접혀 들어간 나비, c 묶는선 폭, d 는 손잡이끈 폭, f 는 묶는선 길이임.

2. 그림중의 사선부분 및 검게 칠해진 부분은 열접합 부분을 나타내고 사선부분은 평접합 부분을 검게 칠해진 부분은 거짓접합 부분을 나타냄.

4. 특수규격봉투 형식

이 선위는 마대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.

일반용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전용
특수규격봉투(1)

관리번호	
------	--

1. 이 마대에는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담는데 사용하며, 끈으로 묶어서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배출품목 예시 : 깨진유리, 도자기, 화분, 사기그릇 및 이사, 정원 수리, 집수리 시 발생 하는 소량의 타일 및 콘크리트 등 매립용 쓰레기

2. 이 마대는 고령군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.

※ 이 마대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고령군 [환경사업소 \(☎ 950 - 7051 ~ 7054\)](tel:950-7051) 및 읍·면사무소

고 령 군 수

[품질인증 표시]

< 관련 법령 >

- 제15조(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)**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(이하 "생활폐기물배출자"라 한다)는 관할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.
-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·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,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, 성질·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,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·군·구에서는 분리·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
- ③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,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④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자의 처리실적을 관할구역 내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에 포함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.
- ⑤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·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,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설치·관리 기준,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고령군 환경사업소	
연 락 처	(054) 950 - 7052